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 의 사 항	０００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000000000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내규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심의 안건상정요청서에 대해 000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００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000님으로 청구배경을 설명드리자면, 0000년 0월 0일 000000이용시 000과 말다툼 시비가 발생하여 000이 밀쳐내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경찰고소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구인은 공단과 000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고 000 보호차원에서 했던 행동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청구인은 장애인콜택시운전원 부당해고 관련해서 공단이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과 당시 해고에 따른 급여 미지급분 지불내역, 그리고 위 사건관련 패소에 따른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심 의 사 항	０００	현재 설명드린 사항이, 공단내 경영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부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안건상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０００	그럼 이상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을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3건의 정보를 요청했는데, 우선 첫 번째 요청사항인 000000000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공개가 타당한지에 대해 안건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０００	우선 정보공개청구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０００	청구인은 구술청구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서 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０００	그럼 혹시 부당해고 관련된 000중에 이 사건의 000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심 의 사 항	0 0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0 0 0	일단 지금 이 사건과 정보를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는것과 비공개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0 0 0	그렇습니다. 다만 청구배경을 참고로 설명드리고자 이 부분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0 0 0	판결문은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하지 않나요?
	0 0 0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사건번호등을 통해 검색을 하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0 0 0	이름 등 개인정보도 나오나요?
	0 0 0	피고, 원고 정도는 나옵니다.
	0 0 0	그럼, 이 판결문을 확인해 보았나요?
	0 0 0	이 판결문은 확인을 못했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확인은 해보았습니다.

심의사항	0 0 0	이름등 개인정보는 안나오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등은 나오고,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명은 나옵니다.
	0 0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은 신원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직무상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직무상이라는 개념자체가 좁은 의미도 아니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기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0 0	현재 여기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소지라든가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0 0 0	본문에 나와있는 이름등은 제외하고 000으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0 0 0	참고로,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편람 중 유사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금더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심 의 사 항	０００	판결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판결문을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웹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０００	그럼 첫벗째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분공개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０００	두 번째 사항인 개인당 배상금액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０００	두 번째 안건의 경우도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００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００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 의 사 항	0 0 0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의 경우 질문을 한것인데, 이건 정보공개 요청과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했냐, 않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0 0 0	나중에 구상권청구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때에는 공개에 의무가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0 0 0	청구인이 구술로 청구하였기에, 청구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건의 경우 000님이 말씀하신데로 구상권 청구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0 0 0	하지만, 현재 세 번째 안건의 경우 질문으로 판단하나 자료유무 요청으로 판단하나, 우리 공단에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0 0 0	그럼 부존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0 0 0	아니면,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해당없음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심 의 사 항	○ ○ ○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해당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네, 그렇습니다.(모두)
	○ ○ ○	그럼 세가지 안건에 대해 모든 의견의 모아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의 경우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구상권 행사여부의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	그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번 청구건의 경우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보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심의회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 ○ ○	모두 동의하십니까?
	○ ○ ○	예, 동의합니다.
	○ ○ ○	그럼 201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